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6. 10
- 다. 상정일자 : '97. 6. 23 (제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자 : 재무과장 정부웅

나. 개정사유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

다. 주요내용

-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 (안 제1조)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6.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개정 (안 제3조 별표 1)
- 국민체육진흥광고 설치허가수수료는 동조례 제3조 (요율) 광고물등 설치 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 (안 제3조의 2)
-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례 제3조의 2 삭제에 따라 삭제 (안 제5조 제3항)
- "제증명등"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할것"으로 하고 "생활 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며,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

여는 열람수수료를 "을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으로 개정 (안 제7조 단서, 동조 제1호, 동조 제3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향)

○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
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97-87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6. 7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사유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납부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 (안 제1조)
-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율표중 "6.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개정 (안 제3조 별표1)
- 국민체육진흥광고 설치허가수수료는 동조례 제3조 (요율)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 (안 제3조의 2)
-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례 제3조의 2 삭제에 따라 삭제 (안 제5조 제3항)
- "제증명등"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할것"으로 하고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며,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을 "읍면 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으로 개정 (안 제7조 단서, 동조 제1호, 동조 제3호)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제증명 등수 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 납부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한다.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삭제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단서중 "제증명등"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하며 동조 제3호중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을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으로 한다.

【별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6,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발 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 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납부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 - - - - - - - - - 제증명과 인허가의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등 관리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 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조 (징수방법) ① ~ ② (생략) ③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징수방법) ① ~ ② (생략) (삭 제)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p> <p>1.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 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p> <p>2. (생략)</p> <p>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 - - - - - - - - - - - - - - - - - - - 제증명등 개별법령 에서 따로 정한 것 - - - .</p> <p>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읍면대장 과 리장,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 - - - - - - - - - .</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별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별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수수료 액	구 분	기준	수수료 액
6. 보건사회관계			6. 보건사회관계		
① 삭 제			① 호텔업신고		70,000원
② 삭 제			② 호텔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35,000원
③ 삭 제			③ 콘도미니엄업 신고		70,000원
④ 삭 제			④ 콘도미니엄업 신고사항변경신고		35,000원
⑤ 삭 제			⑤여관(농원 여관)업 신고		25,000원
⑥ 삭 제			⑥여관(농원 여관)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13,000원
⑦ 삭 제			⑦여인숙업 신고		3,500원
⑧ 삭 제			⑧여인숙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2,000원
⑨ 삭 제			⑨공동탕업 신고		6,000원
⑩ 삭 제			⑩공동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3,000원
⑪ 삭 제			⑪가족탕업신고		6,000원
⑫ 삭 제			⑫가족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3,000원
⑬ 삭 제			⑯한증 막업신고		6,000원
⑭ 삭 제			⑭한증 막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3,000원
⑮ 삭 제			⑮사우나탕업 신고		40,000원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구 분	기준	수수료액	구 분	기준	수수료액
⑯ 삭 제			⑯ 사우나탕업 신고사항변경신고		20,000원
⑰ 삭 제			⑰ 증기탕업 신고		40,000원
⑱ 삭 제			⑱ 증기탕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20,000원
⑲ 삭 제			⑲ 복합목욕탕업 신고		40,000원
⑳ 삭 제			⑳ 복합목욕탕업 신고사항변경신고		20,000원
㉑ 삭 제			㉑ 이. 미용업 신고		2,300원
㉒ 삭 제			㉒ 이. 미용업 신고사항변경신고		1,200원
㉓ 삭 제			㉓ 컴퓨터게임장 업 허가		20,000원
㉔ 삭 제			㉔ 컴퓨터게임장 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0,000원
			㉕ 종합유원 시설업 허가		40,000원
			㉖ 종합요원시설 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20,000원
			㉗ 기타유기장 업 허가(신고)		20,000원
			㉘ 기탕유기장업 허가(신고)사항 변경허사(신고)		10,000원
			㉙ 위생관리용역 업 신고		2,300원
			㉚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1,200원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구 분	기준	수수료액	구 分	기준	수수료액
			(31) 세탁업신고		2,300원
			(32) 세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1,200원
			(33) 위생처리 용역업 신고		2,300원
			(34) 위생처리 용역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1,200원
			(35) 기타위생 용품업 신고		2,300원
			(36) 기타위생 용품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1,200원
			(37) 장난감 제조업 신고		2,300원
			(38) 장난감제조 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200원
			(39) 세척제 제조업 신고		10,000원
			(40) 세척제 제조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		5,000원
			(41) 이. 미용사 신규 면허		2,300원
			(42) 이. 미용사 신규면허증 재교부		2,000원
			(43) 공중위생 업소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2,000원
			(44) 공중위생 업소 상호변경		2,000원

*공중위생법 제25조 관련 영업 양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신규에 준한다